

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2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4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20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계획은
 - 토지 취득 2건 4필지 23,037㎡ 2,135,373천원
 - 건물 취득 3건 8동 10,339.34㎡ 7,100,000천원
 - 건물 처분 1건 4동 4,144.4㎡ 2,100,000천원
- 토지 취득 : 2건 4필지 23,037㎡ 2,135,373천원
 - 1.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부지매입 : 3필지 19,737㎡ 1,835,373천원
 - 2.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 부지매입 : 1필지 3,300㎡ 300,000천원
- 건물 취득 : 3건 8동 10,339.34㎡ 7,100,000천원
 - 1.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: 1동 496㎡ 1,500,000천원
 - 2.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: 5동 8,523.34㎡ 3,600,000천원
 - 3.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(방림,대관령면) : 2동 1,320㎡ 2,000,000천원
- 건물 처분 : 1건 4동 4,144.4㎡ 2,100,000천원
 - 1.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매각 처분 : 4동 4,144.4㎡ 2,100,000천원

3. 붙임자료

- 가.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(총괄표) 1부
- 나. 2020년 제2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
- 다.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(부서별) 1부
- 라. 관계법령 발췌 1부

[붙임 가]

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(총괄표)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변경전			변경후			증△감	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합계	토지	8	147,138	9,518,526	10	170,175	11,653,899	2	23,037	2,135,373	
	건물	8	8,223.55	24,608,804	11	18,562.89	31,708,804	3	10,339.34	7,100,000	
	기타	1	100종	691,036	1	100종	691,036				
취 득	매 입	토지	8	147,138	9,518,526	10	170,175	11,653,899	2	23,037	2,135,373
		건물	8	8,223.55	24,608,804	11	18,562.89	31,708,804	3	10,339.34	7,100,000
		기타	1	100종	691,036	1	100종	691,036			
	교 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 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합계	토지	1	87,643	1,145,416	1	87,643	1,145,416				
	건물				1	4,144.4	2,100,000	1	4,144.4	2,100,000	
	기타										
처 분	매 각	토지	1	87,643	1,145,416						
		건물				1	4,144.4	2,100,000	1	4,144.4	2,100,000
		기타									
	교 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 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[붙임 나]

2020년도 제2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예정가격	취득 처분 시기	취득처분사유	비 고 (소유자)
	소재	소재지	수량				
토지취득 합계 (2건 4필지)			23,037	2,135,373			
소계 (1건 3필지)			19,737	1,835,373			
1	대	용평면 이목정리 726-1	19,513	1,815,977	2020 ~2022	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	대관령 원예 농협
2	대	용평면 이목정리 753	105	9,757			
3	전	용평면 이목정리 754-3	119	9,639			
소계 (1건 1필지)			3,300	300,000			
4	전	방림면 방림리 752	3,300	300,000	2020	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	고용석 외1
건물취득 합계 (3건 8동)			10,339.34	7,100,000			
소계 (1건 1동)			496	1,500,000			
1	학교용지	용평면 재산리 1390	496	1,500,000	2020 ~2021	평창문화예술 콘텐츠센터 건립	평창군
소계 (1건 5동)			8,523.34	3,600,000 (리모델링비 1,500,000 포함)			
2	대	용평면 이목정리 726-1 외 2필지(4동)	7,806.84	2,000,000	2020 ~2022	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	대관령 원예 농협
	창고용지	대관령면 황계리 377-177 외 1필지(1동)	716.5	100,000			
소계 (1건 2동)			1,320	2,000,000			
3	전	방림면 방림리 752	660	1,000,000	2020	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	고용석 외1
	전	대관령면 차항리 29-20 외 1필지	660	1,000,000			평창군
건물처분 합계 (1건 4동)			4,144.4	2,100,000			
소계 (1건 4동)			4,144.4	2,100,000			
1	창고 용지 외	대관령면 차항리 262-10외 4필지(4동)	4,144.4	2,100,000	2020	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매각	평창군

[붙임 다]

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부서	쪽
1.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	문화관광과	7
2.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	유통원예과	10
3.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	기술지원과	18

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

-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·예술 향유 기회 확대
-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·예술 계획에 따라 문화예술 인력, 인프라,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지역의 문화적 생태계 발전에 기여
- K-pop과 한류 아이돌을 활용한 “한류사관학교”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2020. 1월 ~ 2021. 12월
- 위 치 :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390번지 일원(구. 재산초등학교 부지)
- 총사업비 : 1,500백만원(전액 군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2020년	2021년	비고
군 비	1,500	100	1,400	

- 사업규모 : 건축면적 496㎡
- 1층(496㎡) : 연습실, 전시실, 스튜디오, 관리실, 화장실, 휴게실 등

□ 추진사항

- 구) 재산초등학교 부지 매입 : 2020. 3.
-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: 2020. 4.

□ 검토사항(필요성)

- 우리 군에서 매입한 구)재산초등학교는 건물이 노후되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있어, 신속한 활용계획 수립이 절실함.

-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이후 세계적으로 평창의 인지도는 높아만 지고 있으나, 우리 군을 찾아 오는 내방객들에게 보여 줄만한 거리는 부족한 실정임.
-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인 K-POP과 한류 아이돌의 세계적인 팬덤을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올 수 있는 「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」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□ 취득대상 재산내역

- 건축물 :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물 신축 1동

(단위 : 천원)

토 지 소 재	지번	사업면적	사업내용	재산가액 (사업비)	비고
용평면 재산리	1390	건물신축 1동 (496㎡)	연습실, 스튜디오, 관리실, 전시실, 화장실, 휴게실 등	1,500,000	

□ 향후계획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: 2020. 4월
- 실시설계비 확보(1억원)(1회추경) : 2020. 5월
- 실시설계 : 2020. 5월 ~ 10월
- 공사비 확보(14억원)(2021년 당초예산) : 2020. 12월
- 공사착공 : 2021. 3월
- 공사준공 : 2021. 12월
-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운영 : 2021. 12월

-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,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공공(학교)급식 및 대량소비처에 납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726-1번지 일원
- 사업량 : 리모델링공사 1식, 부지매입(3필지), 건물취득(4개시설)
 - 리모델링 3,404.94㎡, 부지매입 3필지 19,737㎡, 건물취득 5동 8,523.34㎡
- 사업비 : 5,435백만원(도비 750, 군비 4,685)
 - 부지 및 건물취득비용은 3년간 분할상환, 1년치 1,279백만원
 - 건물 리모델링공사는 도비지원사업, 1,500백만원(도비 750, 군비 750)
 - ※ 평창군 소유시설 매각대금(2,100백만원) 상쇄시 3,335백만원 소요
- 사업기간 : 2020. 5월 ~ 12월

□ 추진사항

-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방안 용역완료 : 2019. 6. 27.
-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추진계획(안) 확정 : 2019. 8. 29.
- 평창군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 및 포럼 개최 : 2019. 11. 19.
-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 연구 용역 : 2020. 1. 16. ~ 4. 14.
-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 : 2019. 9. 23./ 2020. 2. 25.
-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조례,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: 2020. 3. 18.

□ 검토사항(필요성)

- 관내 공공(학교)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, 수도권 판로처를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,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
-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주체로서 역할 수행

□ 취득대상 재산내역

○ 토지

(단위 : m², 원)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편입 면적	재산가액		취득 시기	소유자
					기준가격	예정가격		
계			19,737	19,737	1,707,542,300	1,835,373,000		
용평면 이목정리	726-1	대지	19,513	19,513	1,697,631,000	1,815,977,000	‘20~ ‘22년 (3년분할 상환)	대관령 원협 (유영환)
	753	대지	105	105	8,578,500	9,757,000		
	754-3	전	119	119	1,332,800	9,639,000		

○ 건물

(단위 : m², 원)

소재지	지번	지목	연면적	편입 면적	재산가액		취득 시기	소유자
					기준가격	예정가격		
계			8,523.34	8,523.34	2,984,015,000	2,100,000,000		
용평면 이목정리	726-1	대지	1,044.00	1,044.00	553,152,000	400,000,000	‘20~ ‘22년 (3년분할 상환)	대관령 원협 (유영환)
			3,357.90	3,357.90	838,046,000	600,000,000		
			3,404.94	3,404.94	1,472,817,000	1,000,000,000		
대관령면 횡계리	377-177 외1필지	창고 용지	716.5	716.5	120,000,000	100,000,000	‘20년	대관령 원협

□ 처분대상 재산내역

○ 건물

(단위 : m²,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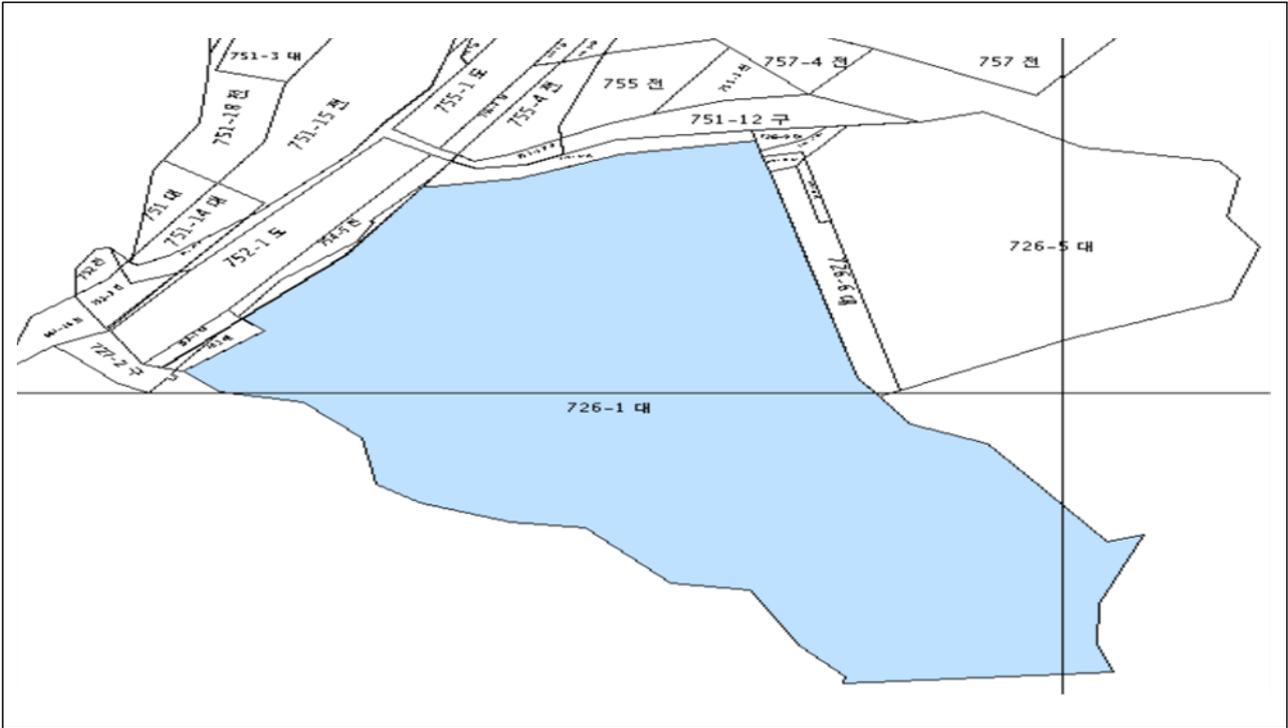
소재지	지번	동명 칭	지적 (m ²)	편입 면적 (m ²)	재산가액(원)		매각 시기	소유자	
					기준가격	예정가격			
계			4,144.4	4,144.4	1,811,576,574	2,100,000,000			
대관령면 차항리 262-10 외 4필지			가동	3,206.97	3,206.97	1,523,644,734	1,768,000,000	‘20년	평창군 (유통원예 과)
			나동	391.84	391.84	125,388,800	144,500,000		
			다동	527.95	527.95	160,496,800	185,000,000		
			라동	17.64	17.64	2,046,240	2,500,000		

※ 기준가격은 ‘20년 시가표준액 기준임

□ 향후계획

- 민·관 공동협의체(평창군 먹거리 위원회) 구성 : 2020. 6월 중
- 평창군 & 평창교육지원청간 학교급식관련 업무협약 : 2020. 8월
-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(리모델링) : 2020. 11월 중
- (재)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: 2020. 12월
- 재단법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: 2021. 2월 중
- 평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: 2021. 2월 중
- 관내 학교 및 공공급식 추진 : 2021. 3월 중

□ 지적도(매입토지)



□ 위치도(매입부지)



♠ 대관령원협 이목정리 산지공판장(취득) : 용평면 이목정리 726-1외 2필지

□ 위치도(매입건물)



♠ 대관령원협 횡계리 저온저장고(취득) : 대관령면 횡계리 377-288외 1필지

□ 위치도(매각건물)



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(처분) : 대관령면 차향리 262-10외 4필지

관계법령 발취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제15조 (영양개선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영양교육사업
2.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3.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

□ 보건의료기본법

제10조(건강권 등)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□ 유아교육법

제3조(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

□ 영유아보육법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제33조(급식 관리)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.

□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9조(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,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·개설·운영, 판로개척, 컨설팅,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,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지역농산물 우선구매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제15조(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 급식·단체급식 등 사업자,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8조(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)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,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·관리가 가능하도록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(이하 “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.

③ 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,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, 교육 및 홍보 업무
2.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
3.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
4.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·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
5. 원활한 수주·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
6.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·추진
7.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

④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.

제19조(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) ① 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·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생산 및 유통,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.

1.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
2.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·홍보, 생산·물류·유통,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

③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, 교육청 소속 공무원, 생산자단체의 대표자,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

-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통한 원거리에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
-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대상지역 : 방림면, 대관령면
- 사업량 :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: 2동 / 1,320㎡
(방림 1동/660㎡, 대관령 1동/660㎡)
- 사업비 : 2,300백만원(국비800 도비160 군비1,340)
-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- 사업내용 : 부지매입, 용도변경 후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

□ 추진사항

- 농업기계 임대사업 예산확보(농식품부) : 2020. 2월
- 예정지 선정 의견수렴, 임대 희망기종 선정 수요조사 : 2020. 2~3월
- 설치예정 부지 최종 결정 : 2020. 3월
 - 방림지역 : 방림면 방림리 752(개인 소유)
 - 대관령지역 : 대관령면 차항리 29-20, 29-24(평창군 소유)

□ 검토사항(필요성)

- 방림지역 사업 예정지는 개인소유 재산이므로 부지를 조기 매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규 설치 활용이 필요함

□ 취득대상 재산내역

○ 토지

(단위 : m², 원)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편입 면적	재산가액		취득 시기	소유자
					기준가격	예정가격		
계				3,300				
방림면 방림리	752	전	6,175	3,300	234,650,000	300,000,000	2020년 (상반기)	고웅석 외 1명

○ 건물(신축)

사업비	구분	시설명	지번	규모/ 연면적	용도	구조	비고
2,000 백만원	신축 (방림)	농기계임 대사업소	방림리 752번지	지상1층/ 660m ²	임대농기계 보관 및 정비실	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	'20.12월 준공
	신축 (대관령)	농기계임 대사업소	차항리 29-20, 29-24번지	지상1층/ 660m ²	임대농기계 보관 및 정비실	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	'20.12월 준공

□ 향후계획

- 토지매입 및 건축 공사비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: '20. 4.~5월
-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실시설계 : '20. 5~6월
-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착공 : '20. 7월
-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준공 : '20. 12월 까지
- 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가 임대 실시 : '21. 1월 부터

□ 지적도(방림사업소)



□ 위치도(방림사업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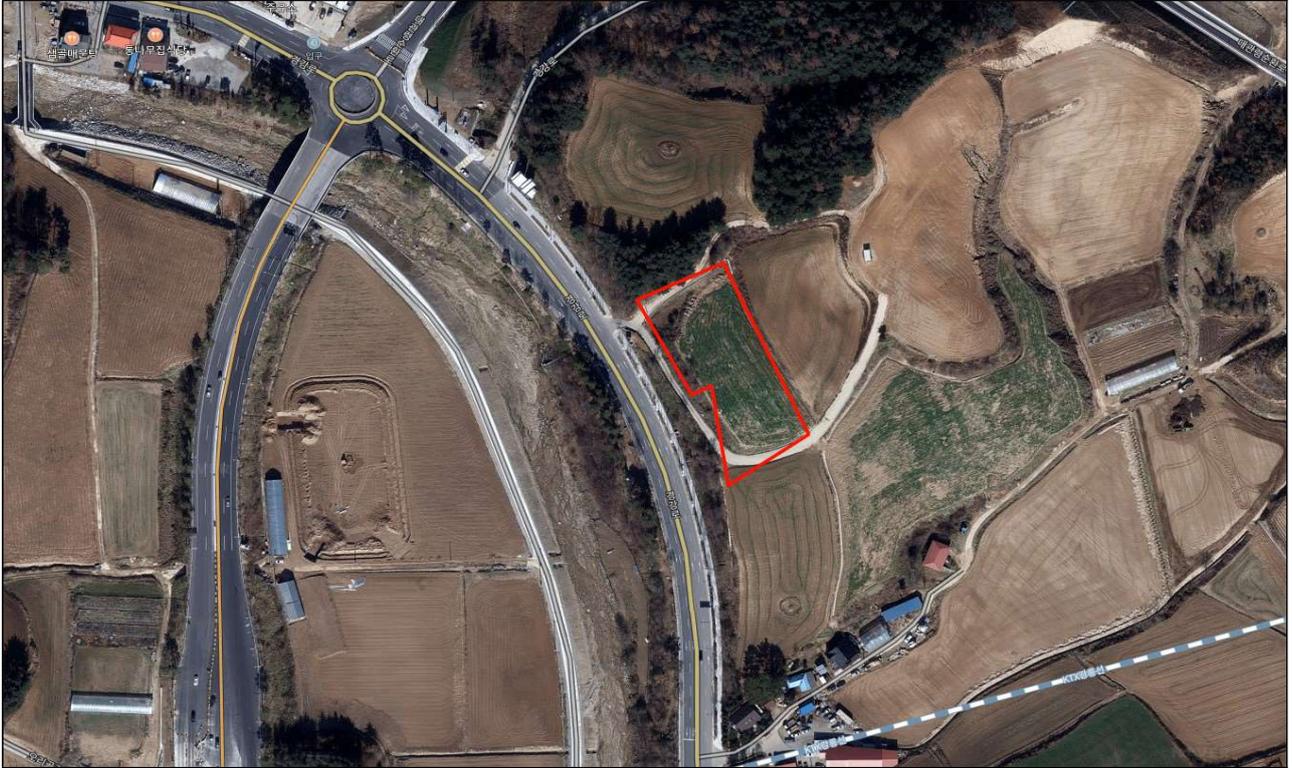
□ 신축예정부지 전경 (방림사업소)



□ 지적도 (대관령사업소)



□ 위치도(대관령사업소)



□ 신축예정부지 전경(대관령사업소)



〈관계법령 발췌〉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“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-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“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

제5조(심의회회의 업무) ① 심의회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08.10.17>
3. 법 제11조 및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4. 삭제 <2015.10.08.>
5.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
6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, 취득·처분에 관한 재심의(다만,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
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
8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9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
10.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
 2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·처분
 3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·처분
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
- 가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
- 나.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
- 다.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(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)시 취득·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